가상자산의 과세

가상자산의 분류와 과세의 문제

국립한밭대학교 회계학과

융합캡스톤디자인 02분반 세무팀

회계학과 20211216 김민경

회계학과 20211217 김민서

회계학과 20211218 김민지

회계학과 20211263 홍소운

지도교수: 이동건

목차

1. 서론

1-1. 가상자산의 정의

1-2.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1-3. 가상자산 관련 이슈

1-4. 가상자산 과세 문제

2. 본론

2-1. 외국 가상자산 분류 실태

2-2. 가상자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인식 등등)

2-3. 가상자산을 기타소득(무형자산)으로 과세 시 문제점

2-4.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

2-5.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시 필요한 과정 및 절차

3. 결론

4. 참고문헌

5. 부록

1. 서론

1-1. 가상자산의 정의

(1) 정의

가상자산이란 컴퓨터 등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이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으로, 각국 정부 혹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다르게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진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등으로 불렸으나 점차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화폐 대신 자산(asset)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명시한 바 있다.

<그림1-1>

2009년 시작된 비트코인 부터 2017년까지 무려 1000여 개에 이르는 가상자산들이 개발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인 약 500여 개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 리플, 대시, 라이트코인, 모네로 등이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1]

법률 상으로는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를 말한다.

[1] [네이버 지식백과] 가상자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8137&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2023.11.26.)

(2) 암호화폐 vs. 디지털 화폐 vs. 가상화폐

<표1-1> 현금,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교[2]

	현금(법정통화)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화폐 형태	주화 또는 지폐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화폐 구분	법정통화	법정통화	가상화폐	암호화폐
적용법규	중앙은행법 적용	중앙은행법 적용	X	X
사용처	모든 거래	가맹점	가상공간	가맹점
발행기관	중앙은행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비금융기관
법정통화와의 교환성	-	법정통화로 충전, 잔액은 법정 통화로 환금 가능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교환할 수 없음	법정통화와 자유롭게 교환

1) 디지털 화폐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란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를 말한다. 이는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와 구별되는 법정통화(legal tender)로서 실물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화폐의 공신력이 담보된다. CBDC는 암호 화폐와 달리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법정 통화로 인정받는다. 암호 화폐처럼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 용도에 활용될 위험성도 낮다. 즉, 시중은행 화폐와 현금으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 보유자 또는 소비자가 은행 계좌 없이 사용할 수 있다.[3]

---

[2] 웬디, mitrade, “가상암호화폐란? 초보자를 위한 가상암호화폐 코인종류, 시세차트확인법, 블록체인원리, 거래소플랫폼추천”, 2022.04.25, https://kr.mitrade.com/crypto/cryptocurrency/basics-about-cryptocurrency-including-most-popular-cryptocurrencies-list-2022, (검색일: 2023.12.02)

[3] 이호선, 디지털비즈온, “암호화폐와 디지털 화폐(CBDC) 의 차이점은 ?”, https://www.digitalbizo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835, 2022.10.09, (검색일: 2023.12.02)

2) 가상화폐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유럽중앙은행(ECB)은 2012년에 가상화폐를 “개발자에 의하여 발행되고 통상 관리되며, 특정한 가상커뮤니티의 회원들 간에 사용되고 수령되는 규제되지 않은 디지털화폐의 한 유형”이라고 정의 하였다. 또한 액면가가 고정된 CBDC와 달리, 암호 화폐의 교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문에 암호 화폐는 '화폐'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많다.

3) 암호화폐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암호화'라는 뜻을 가진 'crypto-'와 통화, 화폐란 뜻을 가진 'currency'의 합성어로,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로 암호화되어 분산 발행되고 일정한 네트워크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이다. [4]

[4] 이호선, 디지털비즈온, “암호화폐와 디지털 화폐(CBDC) 의 차이점은 ?”, https://www.digitalbizo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835, 2022.10.09, (검색일: 2023.12.02)

1-2.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1) 개념

블록체인은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중앙 관리조직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용자가 거래내역 등의 데이터를 분산·저장할 수 있다. 여러명의 사용자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기존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서 금융기록은 은행이, 진료 기록은 병원이, 물건 구매 내역은 쇼핑몰 등이 각각 관리하는 것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사용자가 데이터를 관리한다. 이 때문에 탈중앙화 기술이라고도 한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보상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검증자로 참여한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쓰이는 것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통한 보상체계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자발적인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인 셈이다.[5]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은 분산형 구조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담보할 중앙집중적 조직이나 공인된 제3자가 필요하지 않아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중앙집중적 조직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존의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보안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시스템의 노드(전체 블록체인을 저장하고 있는 컴퓨터로 블록 전파, 거래 검증 등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함)가 트랜잭션 데이터(일종의 거래 장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일부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시스템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분산된 구조이기 때문에 디도스(DDoS)와 같은 해킹 공격에도 안전하다.[6]즉,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통해 탄생하였다.

---

[5] 이설영, 김소라,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블록체인, 한몸 vs 딴몸?... 코린이가 알아둘 블록체인”, 2021.05.18, https://www.fnnews.com/news/202105171500021741, (검색일: 2023.12.02)
[6] 한서희 변호사, 법률신문, “한 눈에 이해하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2018.05.08, https://www.lawtimes.co.kr/news/143043, (검색일: 2023.12.02)

(2) 종류

<표 1-2> 블록체인의 종류[7]

구분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읽기 권한	누구나 열람 가능	허가된 기관/담당자만 열람 가능
참여자 구분	불가능	권한 부여, 권리 제한 가능
속도	느림 (7~20 TPS)	빠름 (1000 TPS 이상)
분산화	가능	가능
탈중앙화	높음	낮음
업그레이드	어려움	쉬움
대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리플, 아이콘 등

'퍼블릭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성격이 강한 블록체인의 유형으로, 제한없이 불특정 다수 누구나 운영할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구나 데이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 확장이나 수정 등의 업그레이드가 어렵고, 거래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퍼블릭 블록체인 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에는 퍼블릭 블록체인과는 반대로 특정 네트워크 상에서 만든 인증방식을 통해 검증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 폐쇄적이고 권한이 집중되어 투명성이 낮은 편이지만, 참여자가 제한되어 처리 속도가 빠르다. 특정 기업의 특성에 맞게 설계할 수 있어 보안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또한 네트워크의 규칙 또는 거래 내용 수정이 가능해 업그레이드 및 잘못된 계약에 대한 정정도 가능하며, 대표적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에는 리플, 아이콘 등이 있다.

[7] Samsung Semiconductor Newsroom, "가상화폐의 주역, 블록체인 기술이란?", 2020.04.27, https://bit.ly/3w1DQ4p, (검색일: 2023.12.02)

(3) 블록체인 거래 과정

<그림1-2> 블록 체인 거래 과정[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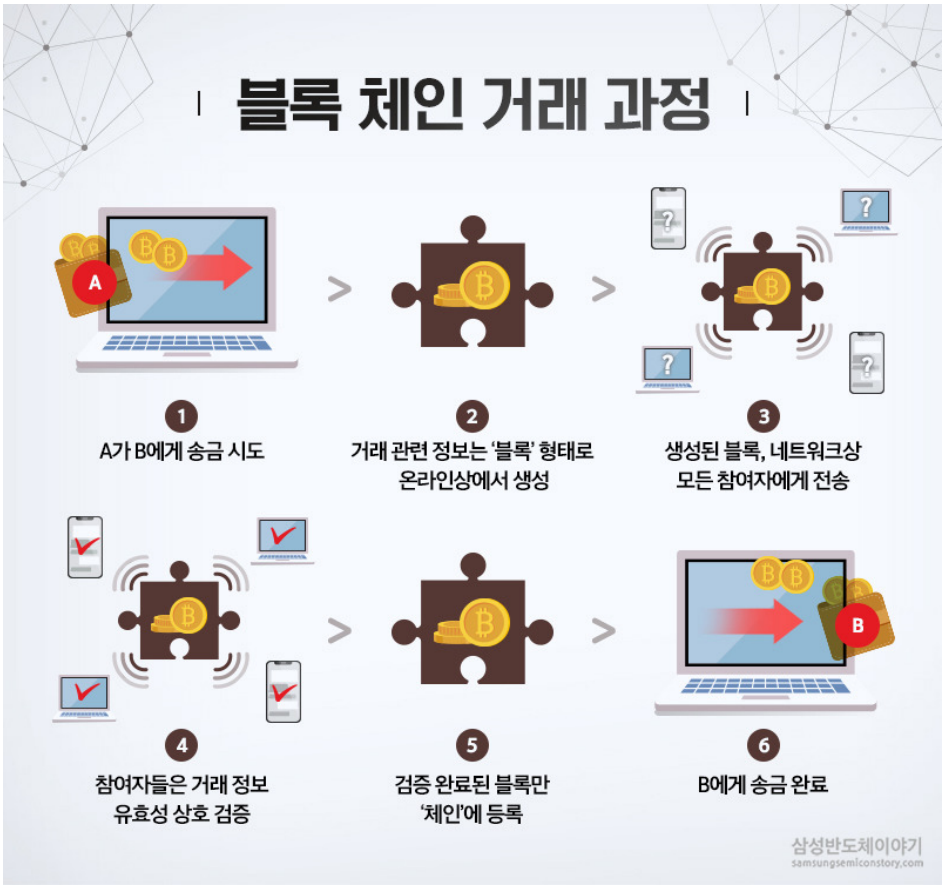

A가 B에게 10만원을 송금하는 경우, A의 계좌에서는 10만원이 줄어들고, B 계좌에는 해당 금액이 늘어난 데이터가 담긴 블록이 생성된다. 이 때 생성된 블록은 네트워크상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되어 각 참여자들이 거래 정보의 유효성에 대해 상호 검증한다.

참여자 절반 이상의 데이터와 일치하는 거래 내역은 정상 장부로 판단되고, 검증 완료된 블록은 이전 블록과 연결되어 체인을 이룬다. 블록의 사본들은 모든 참여자의 컴퓨터에도 동일하게 분산 저장된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거래 참여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하며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한다.[9]

---

[8] Samsung Semiconductor Newsroom, "가상화폐의 주역, 블록체인 기술이란?", 2020.04.27, https://img.samsungsemiconductor.com/kr/wp-content/uploads/2021/06/block_chain_trend_20200427_03.jpg, (검색일: 2023.12.02)

[9] Samsung Semiconductor Newsroom, "가상화폐의 주역, 블록체인 기술이란?", 2020.04.27, https://bit.ly/3w1DQ4p, (검색일: 2023.12.02)

1-3. 가상자산 관련 이슈

다가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의 과세가 시작된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186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1.3%(122조 4000억원)이나 급증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해외가상계좌 때문이다. 해외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된 이유는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개정 때문이다. 국회는 국조법 제 52조 제1호 및 제2호를 개정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가상자산거래를 추가했다.[10] 따라서 앞으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1-4. 가상자산 과세 문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전제 하였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다보니 양도차손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을 공제 해줄 수 없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자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필요하고 볼 수 있다.

가상자산의 소득금액이 작은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면 5천만원 공제가 있어 기타소득 과세보다 유리하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소득금액이 고액인 경우, 누진세율 때문에 기타소득 과세가 금융투자소득 과세보다 유리하다.

<그림1-3> P2P거래

[10] 조용석, “임박한 가상자산 과세…국세청은 은닉 해외가상자산을 찾을 수 있을까?”, 이데일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86675?sid=101, (검색일: 2023.11.26.)

시민 설문조사 결과,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 보다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민들의 이런 인식을 반영하여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 2025년부터 시행될 개정법 상 개인간의 거래인 P2P 거래에 대해 추적이 가능할지, 개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징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만약 실질적으로 P2P 거래에 대해 추징이 어렵다면 납세자간 과세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P2P(peer-to-peer network)는 클라이언트나 서버란 개념없이, 오로지 동등한 계층의 노드들이 서로 클라이언트/서버 역할을 동시에 네트워크 위에서 하게되는 기술이다.

2. 본론

2-1. 외국 가상자산 분류 실태

각 국가에서는 가상자산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규제와 과세 방법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가상자산이나 암호화폐의 특성, 사용 용도, 법적 지원과 규제 기관의 입장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표2-1> 비사업용 가상자산 양도·대여이익 과세의 국제 비교[11]

소득시 체계	포괄주의		열거주의		
국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대한민국
가상자산 대여소득	일반소득 (종합과세)	잡소득 (종합과세)	잡소득* (종합과세)	기타소득 (종합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가상자산 양도소득	자본이득	잡소득 (종합과세)	자본이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기타소득 (분리과세)
이월공제	기한없이 허용	불가	허용	허용(단기 자본손실)	불가

<표 2-1>을 보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포괄주의, 영국과 독일 및 한국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대여소득에 있어 한국 만이 분리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표에 제시된 다른 국가들은 종합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와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양도소득의 경우 한국과 독일은 기타소득,

[11] 김갑래,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2-23, 2022, p.9

* 가상자산 대여를 통해 정하여진 수익을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잡소득(miscellaneous income)으로서 종합과세가 된다. 그러나 가상자산 대여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정해지지 않은 수익을 일시적으로 받는 등 수익이 자본이득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자본이득과세의 대상이 된다. HMRC(2022b)

미국과 영국은 자본이득, 일본은 잡소득으로 소득처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은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표2-2> 블록체인 검증 소득에 대한 과세의 국제 비교[12]

소득시 체계	포괄주의		열거주의		
국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대한민국
사업소득과 비사업소득 분류	명확	명확	명확	명확	불명확
비사업적 채굴 또는 검증에 따른 가상자산 수취시 과세	일반소득 과세	잡소득 과세	잡소득 과세	기타소득 과세	불명확 (비과세)

<표2-2>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과 한국의 블록체인 검증 소득에 대한 과세 분류를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주요국은 대부분 블록체인 검증 대가인 소득의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비사업소득에 비해 폭넓게 필요경비를 인정한다.[13]

1) 미국·일본

미국 및 일본과 같이 포괄주의 소득과세 체계를 가진 국가의 경우, 블록 검증의 대가에 대해서는 채굴 작업이냐 지분 검증이냐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종합 과세한다는 과세 논리가 명확하다.[14]

2) 한국

한국은 블록체인 검증 소득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반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과세로 처리하고 있는 등 다른 국가에 비해서 불명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비사업적 채굴 또는 검증에 따른 가상자산 수취시에도 과세를 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은 일반소득 과세, 일본과 영국은 잡소득 과세, 독일은

[12] *Ibid.,* p.17
[13] *Ibid.,* p.16
[14] *Ibid.,* p.15

기타소득 과세로 명확하게 처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역시 현재보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필요해보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과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2. 가상자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기능범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비대면 구글 폼으로 진행한 결과 총 62명이 참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이다.

<그래프 1> 설문참여자의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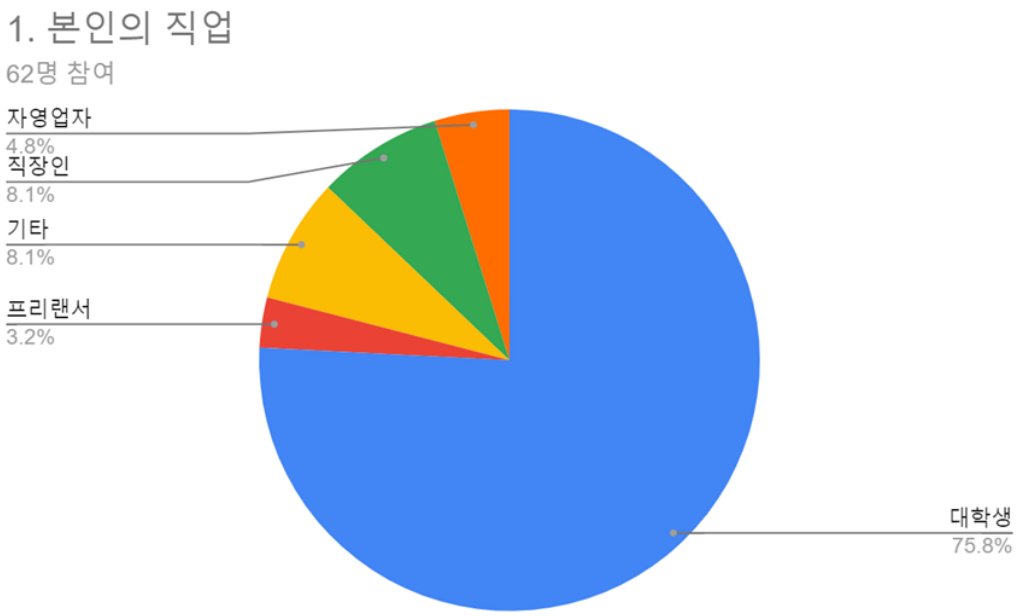

<그래프 2> 설문참여자의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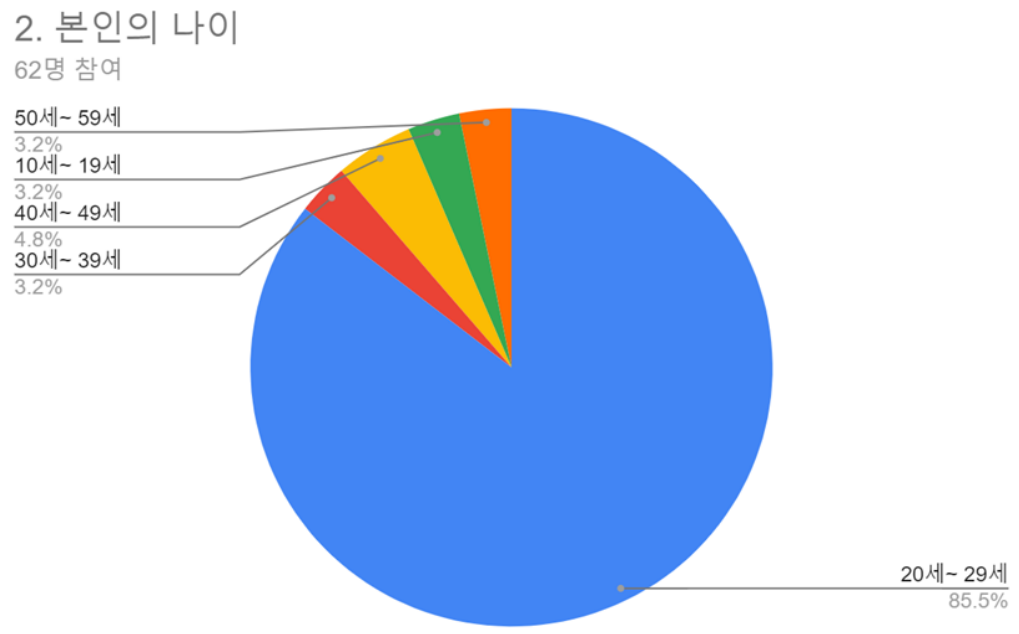

참여자의 직업	
대학생	75.8%
직장인	8.1%
자영업자	4.8%
프리랜서	3.2%
기타	8.1%

참여자의 나이	
10~19세	3.2%
20~29세	85.5%
30~39세	3.2%
40~49세	4.8%
50~59세	3.2%

<그래프 2-3> 설문 참여자의 가상화폐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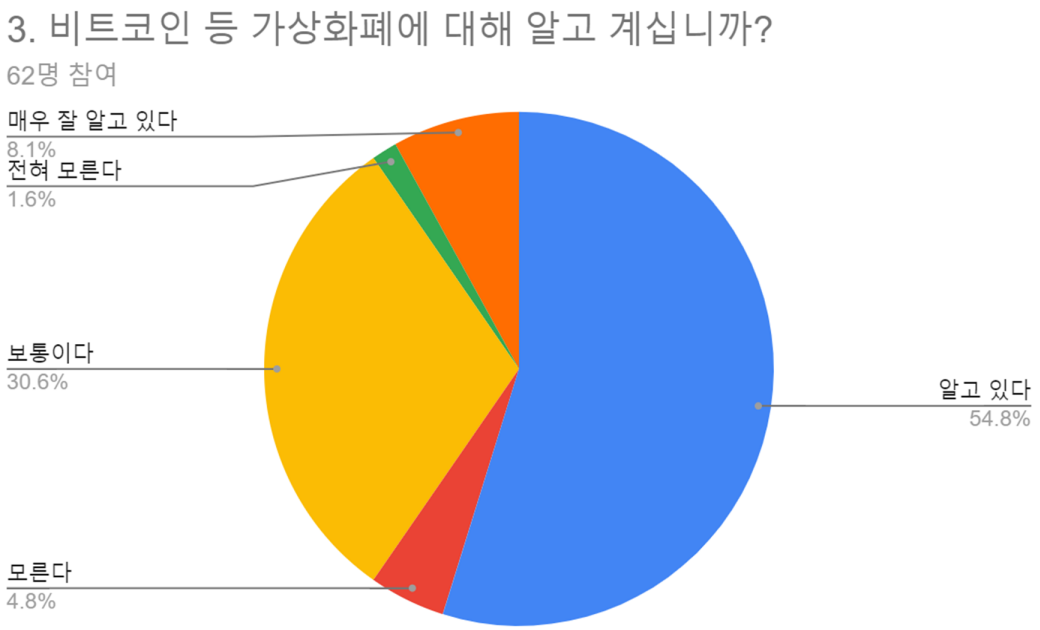

설문 참여자의 가상화폐 이해도	
매우 잘 알고있다	8.1%
알고있다	54.8%
보통이다	30.6%
모른다	4.8%
전혀 모른다	1.6%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매우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다, 보통이다를 포함한 93.5%정도가 가상화폐에 대해 알고있다고 답했다. 이를 비추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프 2-4> 가상화폐의 화폐성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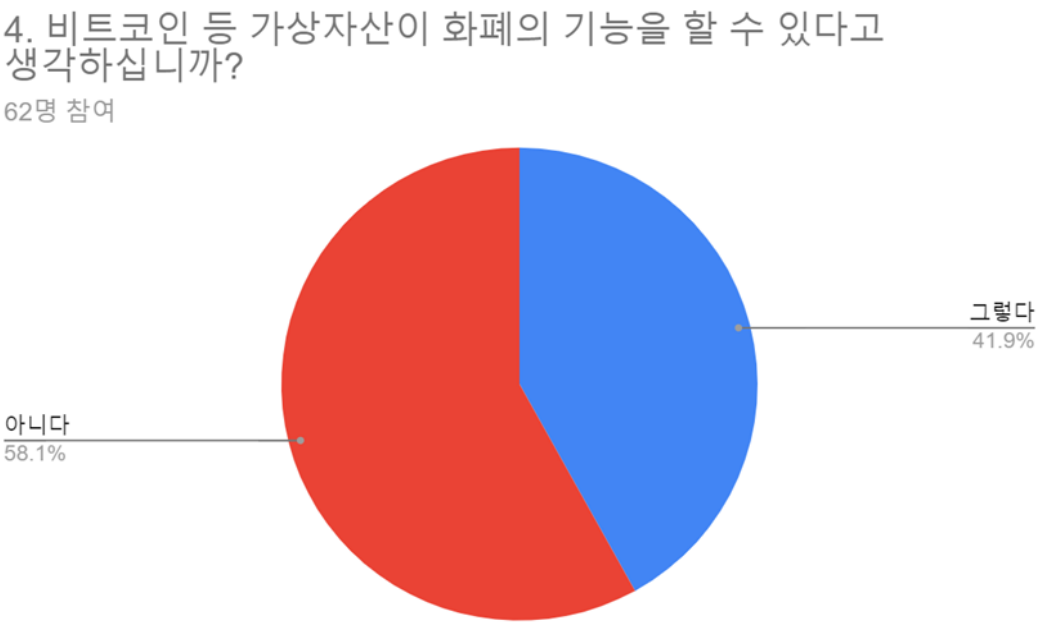

참여자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 비트코인의 화폐성 기능에 대한 긍정적 의견

답변
돈으로 바꿀 수 있어서
가상화폐를 수익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나라에서 화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 비트코인의 화폐성 기능에 대한 부정적 의견

답변
일정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망해서
아직 화폐 고유의 기능까지는 할수 없다고 생각함
변동폭이 너무 크고, 현금처럼 믿을만한 발행기관도 아니라 신뢰성 떨어짐
화폐기능의 목적이 상실한 화폐이다

<그래프 2-5> 가상자산 상용화 시 실생활 사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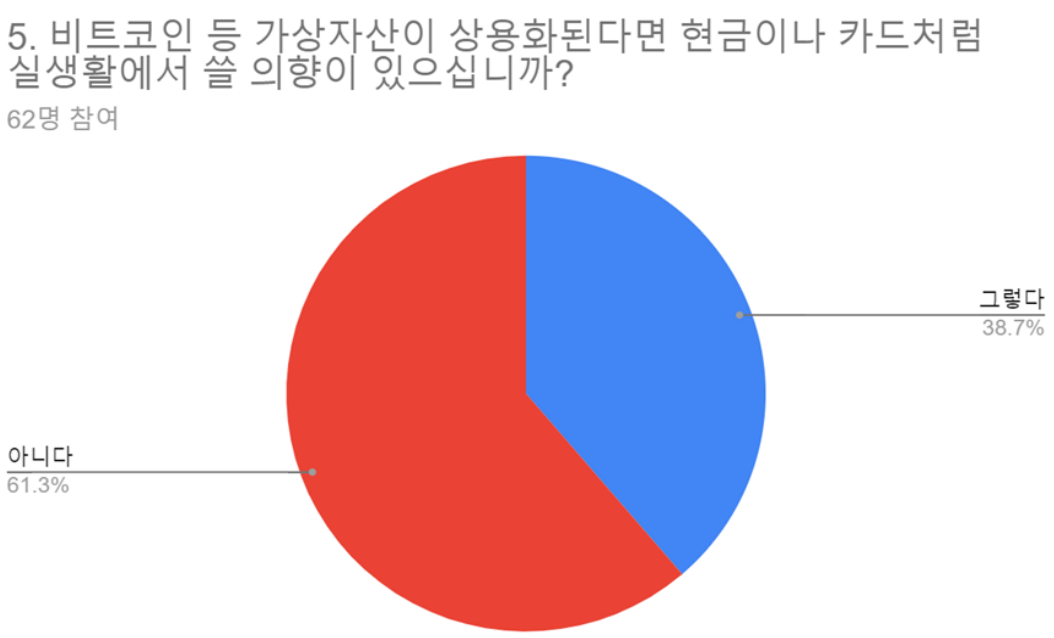

참여자들의 58.1%는 가상자산이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는 비트코인등 가상자산이 화폐와 동일시 되어 인식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가상자산이 상용화된다면 현금이나 카드처럼 실생활에서 쓸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61.3%가 의향이 없다고 대답하며 가상자산과 화폐의 차이에 근거를 더해준다.

- 가상자산 상용화 시 실생활 사용 여부에 대한 긍정적 의견

답변
기타 페이류 어플을 잘 사용중이라 가치만 어느정도 보존된다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함
상용화가 된다는 의미는 그거에 맞는 안정화방안을 찾았다는 의미이기 때문
현재 미국, 일본 등 코인거래가 가능한 매장이 생겨나고 있고, 이미 국가화폐가 비트코인이 된 나라도 있으니 가상자산이 상용화가 된다면 현금이나 카드처럼 쓸 의향이 있음

- 가상자산 상용화 시 실생활 사용 여부에 대한 부정적 의견

답변
익명성이 강하고 해킹에 취약한 가상화폐를 내 자산으로 사용하고 싶지 않음
화폐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폐와 달리 아직 비트코인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많고 인식 자체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서
가치 변동이 심해서
당장 활용 가능하다 한들 양자컴퓨터 개발로 인해 암호화폐의 암호키가 쉽게 뚫려 화폐의 기능을 하지 못함의 이유와 개인대 개인의 거래이므로 지갑 한자리만 잘못 입력해도 돈이 사라지고, 영영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이 큼
비트코인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채굴, 거래방법 등이 복잡함

<그래프 2-6> 가상자산과 주식의 유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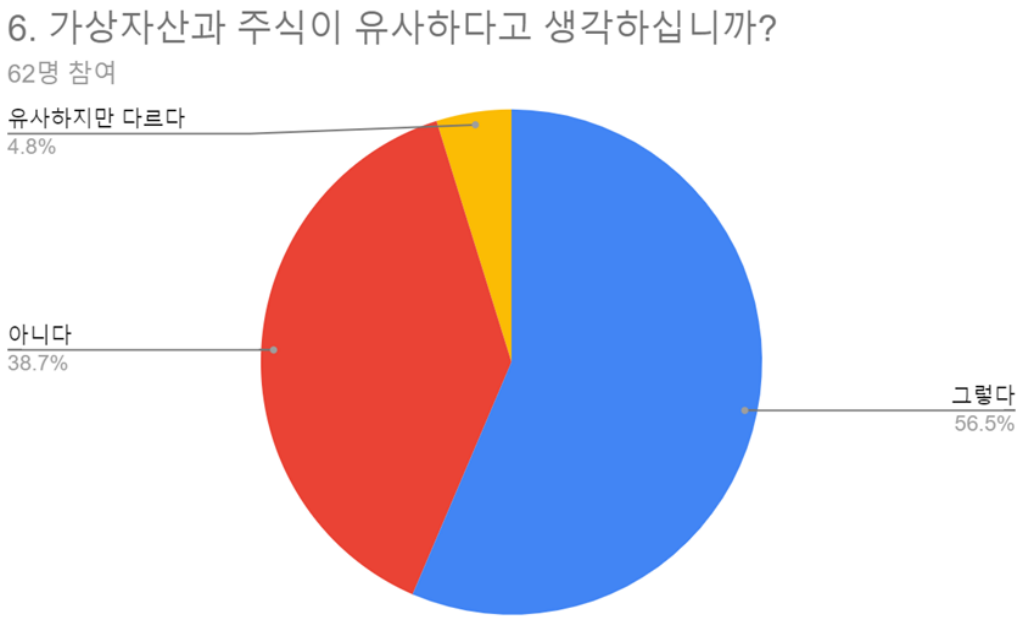

<그래프 2-7> 가상자산과 주식의 동일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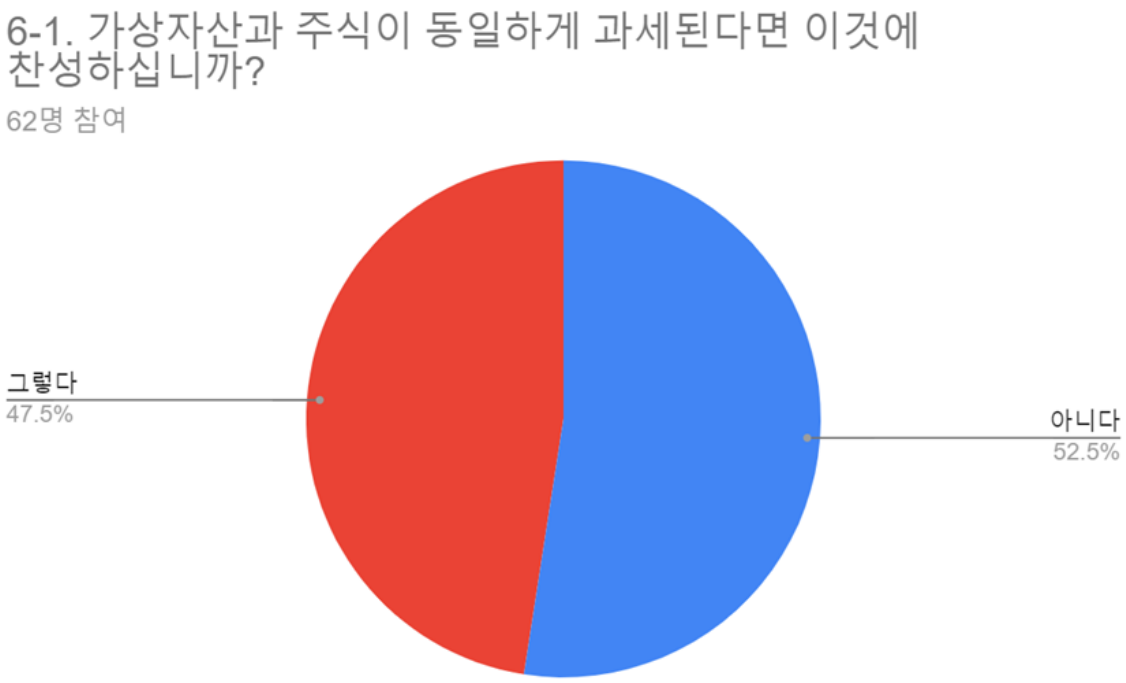

- 가상자산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

답변
가상자산은 현재의 결제수단 중 방법일 수는 있지만 상용화가 되거나, 화폐의 대체재가 된다면 사회적으로 아직은 자리를 잡거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고 실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고 사용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주식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재산으로 인식하듯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도 하나의 화폐로 인식이 되어 언젠가는 화폐로 상용화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또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되어 보이지 않는 부자들도 생겨나기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암거래도 더 활발할 것 같으니 이를 보완할 규정같은 것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전한 거래만 보장된다면 상용화되어도 충분하다.

처음에 가상자산을 접했을 땐 이런 것이 과연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상자산의 종류가 많아지고 여러 국가들이 화폐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들과 이미 국가의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를 보며 언젠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전 세계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봤을 때 가상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세법이 있다고 확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특례나 새로운 세법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새로운 개정안을 만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조세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상자산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실생활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트에 가서 비트코인으로 5,000원 어치 샀는데 비트코인 때문에 10,000원 더 잃고 싶지 않아요.

참여자들은 가상자산과 주식이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반면 가상자산과 주식이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답변이 조금 더 우세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즉, 가상자산과 주식을 같은 금융투자자산으로 인식하되, 세부적인 과세 방법에는 차이를 두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림2-1> 가상자산과 주식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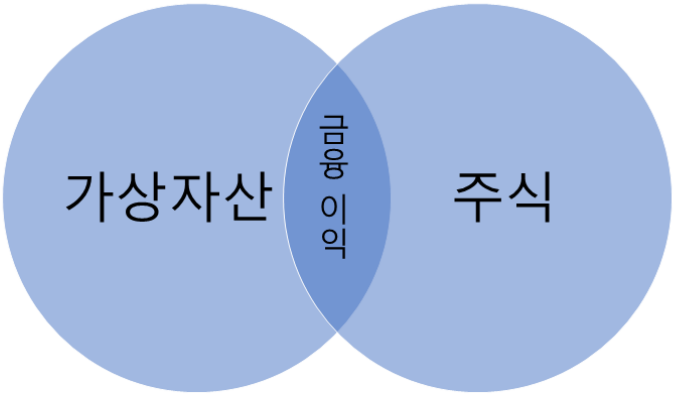

2-3. 가상자산을 기타소득(무형자산)으로 과세 시 문제점

(1)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 시 문제점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부터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과세당국은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에 관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 하였다고 설명한다. 즉,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는 가상자산을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또한, 국내 소득세법상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따라서 무형자산인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논리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식별이 가능하므로 영업권과 괴리가 있고, 내부적으로 창출되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정도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식하는 개발비와도 다르다. 특허권, 저작권과 같이 일정 비용을 투입하여 그 사용을 일정 기간동안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와도 가상자산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가상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정의규정에 부합되는 것 외에는 무형자산과의 동질성이 없다. 또한, 이미 투자자산 또는 자본자산의 일종으로 가상자산을 과세하고 손익통산 등을 허용하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해외 과세 입법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않은 점이 문제임을 말할 수 있다. [15]

(2) 가상자산거래시장의 증권거래시장 유사성

[15] *Ibid.*, p.2

(3) 가상자산 과세와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차이

<표2-3> 가상자산 과세와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차이[16]

구 분	가상자산소득	금융투자소득
소득의 분류	기타소득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가상자산의 양도소득	주식, 채권, 펀드 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기본공제	가상자산 양도금액 – 취득원가 - 부대비용 - 250만원	금융투자자산 양도금액 – 취득원가 - 부대비용 – 이월결손금 - 5,000만원(상장주식,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 또는 250만원(그 외 금융투자자산)
세율	20%	20% (단, 3억원 초과분은 25%)
시행일	2025. 1. 1. 양도분 부터	2025. 1. 1. 양도분 부터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능	5년간 이월공제 가능
과세방법	기타소득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 분류과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불가능	가능
취득원가 등 과세자료 공유	거래소가 다수이므로 취득원가를 개인이 직접 증명해야 함. 외국거래소나 과세관청 간의 자료공유가 쉽지 않음.	통합된 증권거래소 및 금융기관이 존재하므로 과세관청이 자료의 수집 및 공유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음.

현재 가상자산의 경우 거래소가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다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16] 이동건, “가상자산의 회계와 세무처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밭경상연구, p.17

취득원가를 개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므로 과세 과정이 상당히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증권거래소와 금융기관이 통합된 상태이므로 과세관청의 과세 처리가 훨씬 유연하다. 또한, 기존 가상자산 투자소득의 세율은 20% 단일 세율이지만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할 경우 3억원까지는 20%를 적용하고,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일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가상자산과 무형자산의 동질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형자산보다는 주식과 유사한 성격의 금융자산에 속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가상자산은 본래 화폐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발명되었으나, 실제로는 가상자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하여 투자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십 조 원에 달하던 가상자산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고,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도산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계기로 언론계, 정치권 및 학계에서도 가상자산의 법적성격, 특히 금융투자상품성에 대한 검토와 금융규제의 적용 가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는 금융규제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아래의 금융투자상품성을 가지고 실제로 투자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금융투자상품성을 가진 신종 금융투자상품 또는 유사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금융규제의 취지상 금융투자상품이란, 투자수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투자 자금의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상자산은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7]

[17] 강다혜,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성 및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64455, 2023 (검색일: 2023.11.26.)

2-4.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

(1) 문제점

1) P2P거래시 문제점

현재 가상자산 소득세의 과세는 양도대가(가상자산을 팔고 받은 돈)에서 취득가액(가상자산을 살 때 소요된 돈) 및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한 후 다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바로 P2P 거래에 대해 추적 어려움 문제이다. P2P 거래의 경우 개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징이 어렵다. 만약 실질적으로 P2P 거래에 대해 추징이 어렵다면 납세자간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외국거래소 거래 시 문제점

<그림 2-2> 해외계좌 신고자산별 금액현황[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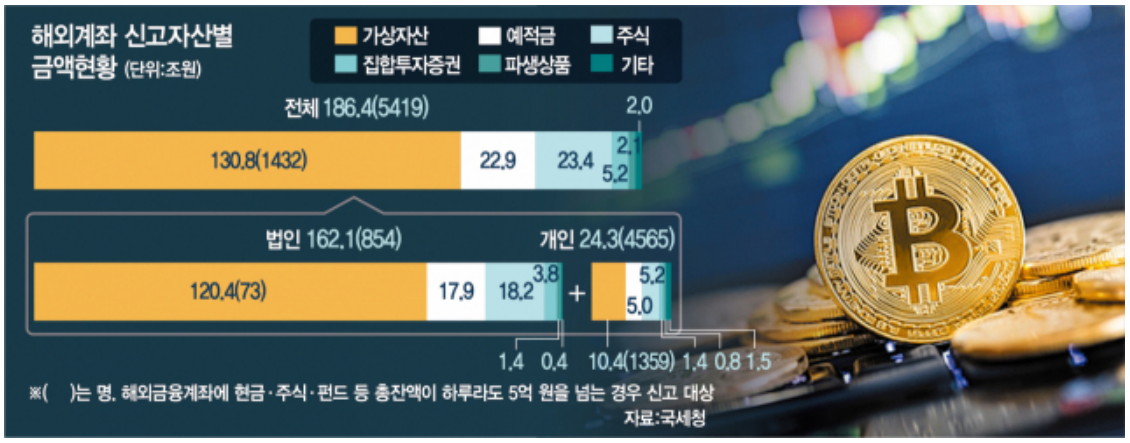

해외거래소거래의 경우 국내거래소를 거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거래를 포착할 수 없다. 자진신고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알 수 없다. 정부는 자금출처조사, 가산세 같은 간접적이고 사후적인 방법으로 거래 사실을 포착하려 하고 있고, 해외 거래

[18] 송종호, 서울경제, "베일벗은 해외 가상자산 131조…92%가 법인", 2023.09.20,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RAJ5UKV, (검색일: 2023.12.02)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기존에도 존재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특히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19]

(2) 개선방안

1) P2P거래의 개선방안: 소프트웨어 개발

a) 과세관청이 P2P 방식의 가상자산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처럼 가상자산 거래 추적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020년 4월 가상자산 부정거래 추적 기술을 연구해 2023년 5월 시제품 개발에 착수했다.[20]

2) 외국거래소 거래 시 개선방안: 외국 국세청 협력[21]

a)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한국의 지방국세청장 등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체약상대국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정보교환을 요구할 수 있고 요건을 검토한 후 체약 상대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에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다. 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현장 확인 중 납세자의 탈세혐의가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b) 자발적 정보교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의 탈세혐의가 확인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자료 통보를 요청하고 검토하여 이를 체약 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국내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탈세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받은 경우 납세지 관할

---

[19]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해외거래소·P2P거래 ‘자진신고’ 해야…외국인은 BTC로 출금해도 과세”, 2020.07.22, https://m.ddaily.co.kr/page/view/2020072216021841208, (검색일: 2023.12.02)

[20] 윤형하, “가상자산 탈세 어떻게 대비?…"추적SW 개발하고 국세청에 전담조직"”, 2023.09.15,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1175, (검색일: 2023.12.02.)

[21] 세무법인호연, “국가간 조세협력” , 2019.06.21, http://www.ihoyeontax.com/board/view/data2/65, (검색일: 2023.12.0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자료 활용 후 7일 이내 국세청장에게 결과보고)

c) 소득자료 자동정보교환: 국세청장은 국내에서 수집한 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자료와 체약상대국에서 수집된 국외소득자료를 체약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주의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d) 금융정보 자동정보교환: 국세청장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해 필요한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2]

e) 「국제조세조정에 대한 법률」 제 52조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외가상자산사업자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었다.

신고대상: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신고 기한: 다음해 6월 1일 ~ 다음해 6월 30일까지

신고 기관: 관할 세무서[23]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를 뜻한다.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알려야 한다.

f)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있다. 은행, 법원행정처 등 14개

---

[22] *Ibid.*

[23] 빗썸카페 - No.1 가상자산 플랫폼, 빗썸 (bithumb.com)

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부동산소유권 변경사실, 법원공탁금 등 32종의 재산정보를 제공받아 체납액 징수에 활용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정보도 제공받아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고 있다.[24]

[24] 고광효,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 협업으로 실현하자", 2023.11.3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130000384, (검색일: 2023.12.02.)

2-5.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시 필요한 과정 및 절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제3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

쉽게 말해서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돈을 내고 취득하는 계약상 권리로서 원본손실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금융투자소득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2-4> 금융투자소득 분류 체계[25]

분류			예시
금융투자	증권	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회사채
		지분증권	주식
		수익증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ELS, ELW
		증권예탁증권	DR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선물, 옵션
		장외파생상품	선도, 스왑

[25] 법무법인 에이엘,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될까”, http://lawal.co.kr/sub03_1_detail2.php?num=17, 2021.07.22. (검색일:2023.11.26.)

현재는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포함될 수 없다.

채무증권은 국채, 회사채와 같이 투자자가 증권의 발행인에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가상화폐 투자자는 가상화폐 발행인에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다. 지분증권은 자기자본에 대한 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권(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표생하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투자자에게 주주로서의 지위나 지분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수익증권은 신탁의 수익권을 표시한 것으로서 펀드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통 "펀드를 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투자자는 펀드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펀드를 잘게 나누어 놓은 수익증권을 사는 것이다.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가상화폐는 신탁 형태를 사용하지 않는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여 손익을 분배 받는 계약이 표시된 것인데, 가상화폐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파생결합증권은 ELW, ELS와 같이 기초자산의 변동에 연계하여 가치가 변동되는 것인데, 가상화폐는 기초자산이 없다. 증권예탁증권은 흔히 DR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발행된 증권을 해외 투자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예탁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가상화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의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6]

선물, 옵션과 같이 정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 장내파생상품이고, 밭떼기 거래와 같이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사적 계약에 따라 거래되는 것이 장외파생상품이다. 파생상품에 해당하려면 계약상의 권리로서 기초자산과 연관이 있어야 하는데, 가상화폐는 기초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27]

그러므로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금융투자상품에 새로운 분류를 만들어야 한다. 그 분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26] *Ibid.*
[27] *Ibid.*

<표2-5>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분류[28]

분류			예시
금융투자	증권	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회사채
		지분증권	주식
		수익증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ELS, ELW
		증권예탁증권	DR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선물, 옵션
		장외파생상품	선도, 스왑
	가상자산		가상자산

이때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 가상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9]“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28] *Ibid.*

[29]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19563,20230718), 2023.07.18. (검색일: 2023.11.26)

다.「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상법」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금융투자자산의 과세 표준은 다음과 같다.

금융투자자산 양도금액 – 취득원가 - 부대비용 – 이월결손금 - 5,000만원(상장주식,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 또는 250만원(그 외 금융투자자산)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자산에 속하게 한다면 다음과 같이 과세해야 한다.

금융투자자산 양도금액 – 취득원가- 부대비용 – 이월결손금(60%) - 250만원

다른 금융투자자산과 유사하게 과세하되, 차이를 준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로 차이를 준 이유는 이월결손금 개별 납세 방식 중 중소기업 등 일정한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은 60% 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표2-6>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30]

[30] 이철재 공인회계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TAXNET, http://m.taxnet.co.kr/silmuHaesul/tax_View.asp?num=9085&sCheck=1, 2021.09.01. (검색일: 2023.11.26.)

구분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개별 납세 방식	중소기업 등 일정한 내국법인	100%	100%	100%	100%	100%
	위 외의 내국법인	100%	80%	80%	70%	60%
	외국법인	100%	100%	80%	80%	60%
연결 납세 방식	중소기업 등 일정한 연결법인	10%	100%	100%	100%	100%
	중소기업 등 일정한 법인이 아닌 연결법인	100%	80%	80%	80%	60%

위와 같이 기존 금융투자자산의 과세 표준에서 가상자산의 경우만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로 제한하고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하여 과세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른 금융 상품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로 수수료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고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상자산에 이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등에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식의 경우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이를 활용하여 기업 경제나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장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은 의미는 있지만 국가 경제 발전에 직접적인 관련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기존 금융투자자산만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기존 과세 표준과는 다르게 한도를 두고 새로운 과세 표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지난 2020년, 국회는 국조법 제 52조 제1호 및 제2호를 개정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가상자산거래를 추가했다.

현 시점에 가상 자산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설문조사 결과 <그래프2-3>을 참고하여 봤을 때 93.5%가 알고 있다는 답변을 참고했을 때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상가산과 관련된 법안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며 다가오는 2025년부터 해당 세법이 시행되는 만큼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을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또한 국내 소득세법에서는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논리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식별이 가능하므로 영업권과 괴리가 있고, 내부적으로 창출되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정도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식하는 개발비와도 다르다. 따라서 가상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정의규정에 부합되는 점 외에는 무형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세의 과세는 양도대가에서 부대비용을 차감한 후 다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사용되는 은행을 제한하는 것과 국세청이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탈세를 방지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가상자산의 소득금액이 고액인 경우, 누진세율 때문에 기타소득 과세가 금융투자소득 과세보다 유리하다. 반대로 가상자산의 소득금액이 소액인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면 5천만원 공제가 있어 기타소득 과세보다 유리하게 된다.

시민 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 보다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더 옳다는 결과가 나왔다. 과반수의 사람들이 가상자산과 주식을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가상자산과 주식이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되, 주식과는 구별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제시한 해결책은 <표 2-5>와 같다. 증권과 파생상품이라는 분류에 가상자산이라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기타소득이나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도 아닌 가상자산만의 독자적인 과세표준을 만들어 새롭게 적용할 수 있으며 다른 금융 상품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갈등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기존 과세 표준과는 다르게 이월결손금 한도를 60%로 두고 새로운 과세 표준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4. 참고문헌

2page

[네이버 지식백과] 가상자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8137&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2023.11.26.)

3page

웬디, mitrade, “가상암호화폐란? 초보자를 위한 가상암호화폐 코인종류, 시세차트확인법, 블록체인원리, 거래소플랫폼추천”, 2022.04.25, https://kr.mitrade.com/crypto/cryptocurrency/basics-about-cryptocurrency-including-most-popular-cryptocurrencies-list-2022, (검색일: 2023.12.02)

이호선, 디지털비즈온, “암호화폐와 디지털 화폐(CBDC) 의 차이점은 ?”, https://www.digitalbizo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835, 2022.10.09, (검색일: 2023.12.02)

4page

이호선, 디지털비즈온, “암호화폐와 디지털 화폐(CBDC) 의 차이점은 ?”, https://www.digitalbizo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835, 2022.10.09, (검색일: 2023.12.02)

5page

이설영, 김소라,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블록체인, 한몸 vs 딴몸?... 코린이가 알아둘 블록체인”, 2021.05.18, https://www.fnnews.com/news/202105171500021741, (검색일: 2023.12.02)

한서희 변호사, 법률신문, “한 눈에 이해하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2018.05.08, https://www.lawtimes.co.kr/news/143043, (검색일: 2023.12.02)

6page

Samsung Semiconductor Newsroom, “가상화폐의 주역, 블록체인 기술이란?”, 2020.04.27, https://bit.ly/3w1DQ4p, (검색일: 2023.12.02)

7page

Samsung Semiconductor Newsroom, “가상화폐의 주역, 블록체인 기술이란?”, 2020.04.27, https://img.samsungsemiconductor.com/kr/wp-content/uploads/2021/06/block_chain_trend_20200427_03.jpg, (검색일: 2023.12.02)

Samsung Semiconductor Newsroom, “가상화폐의 주역, 블록체인 기술이란?”, 2020.04.27, https://bit.ly/3w1DQ4p, (검색일: 2023.12.02)

8page

조용석, “임박한 가상자산 과세…국세청은 은닉 해외가상자산을 찾을 수 있을까?”, 이데일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86675?sid=101, (검색일: 2023.11.26.)

10page

김갑래,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및 개선 방안”,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2-23, 2022, p.9

11page

Ibid., p.15

Ibid., p.16

Ibid., p.17

21page

Ibid., p.2

22page

이동건, “가상자산의 회계와 세무처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밭경상연구, p.17

23page

강다혜, “가상자산의 금융투자상품성 및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https://dspace.ewha.ac.kr/handle/2015.oak/264455, 2023 (검색일: 2023.11.26.)

24page

송종호, 서울경제, “베일벗은 해외 가상자산 131조…92%가 법인”, 2023.09.20,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RAJ5UKV, (검색일: 2023.12.02)

25page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해외거래소·P2P거래 ‘자진신고’ 해야…외국인은 BTC로 출금해도 과세”, 2020.07.22, https://m.ddaily.co.kr/page/view/2020072216021841208, (검색일: 2023.12.02)

윤형하, “가상자산 탈세 어떻게 대비?…"추적SW 개발하고 국세청에 전담조직”, 2023.09.15,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1175, (검색일: 2023.12.02.)

세무법인호연, “국가간 조세협력” , 2019.06.21, http://www.ihoyeontax.com/board/view/data2/65, (검색일: 2023.12.02)

26page

Ibid., p.2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63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7. 18. [제52조]

27page

고광효,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 협업으로 실현하자", 2023.11.3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1130000384, (검색일: 2023.12.02.)

28page

법무법인 에이엘, “가상화폐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될까”, http://lawal.co.kr/sub03_1_detail2.php?num=17, 2021.07.22. (검색일:2023.11.26.)

29page

Ibid.

Ibid.

30page

Ibid.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19563,20230718), 2023.07.18. (검색일: 2023.11.26)

32page

이철재 공인회계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TAXNET, http://m.taxnet.co.kr/silmuHaesul/tax_View.asp?num=9085&sCheck=1, 2021.09.01. (검색일: 2023.11.26.)

5. 부록

1. [한밭대학교 회계학과 융합 캡스톤 디자인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기능 범위”]

1. 본인의 직업
☐ 대학생
☐ 자영업자
☐ 직장인
☐ 프리랜서
☐ 기타

2. 본인의 나이
☐ 10~1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기타

3.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전혀 모른다
☐ 모른다
☐ 보통이다
☐ 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

4.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
☐ 아니다
☐ 기타

4-1. 위와 같은 생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관식 선택사항)

5.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상용화된다면 현금이나 카드처럼 실생활에서 쓸 의향이 있으십니까?
☐ 그렇다
☐ 아니다
☐ 기타

5-1. 위와 같은 생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관식 선택사항)

6. 가상자산과 주식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
☐ 아니다
☐ 기타

6-1. 가상자산과 주식이 동일하게 과세된다면 이것에 찬성하십니까?
☐ 그렇다
☐ 아니다
☐ 기타

7. 가상자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주관식 선택사항)

2. [한밭대학교 회계학과 융합 캡스톤 디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설문조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기능 범위”]

1. 본인의 직업
☐ 대학생
☐ 자영업자
☐ 직장인
☐ 프리랜서
☐ 기타

2. 본인의 나이
☐ 10~1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기타

3.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전혀 모른다
☐ 모른다
☐ 보통이다
☐ 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

4.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
☐ 아니다
☐ 기타

4-1. 위와 같은 생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관식 선택사항)

5.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상용화된다면 현금이나 카드처럼 실생활에서 쓸 의향이 있으십니까?
☐ 그렇다
☐ 아니다
☐ 기타

5-1. 위와 같은 생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관식 선택사항)

6. 가상자산과 주식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다
☐ 아니다
☐ 기타

6-1. 가상자산과 주식이 동일하게 과세된다면 이것에 찬성하십니까?
☐ 그렇다
☐ 아니다
☐ 기타

7. 가상자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주관식 선택사항)

8. 코인을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그렇다
☐ 아니다
☐ 기타

8-1. 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며 불편했던 점이 있으십니까?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8-2. 코인을 하며 수익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8-3. 코인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9. 주식을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9-1. 주식 계좌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9-2.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9-3. 주식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10. 세무처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십니까?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11. 현재 세무 관련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십니까? (주관식 선택사항)

한밭대학교 회계학과 융합캡스톤디자인 설문조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기능 범위"

1. 본인의 직업 [illegible]
2. 본인의 나이 [illegible]
3.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O, X)
4.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O, X)
5. 위와 같은 생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6.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상용화 된다면 현금이나 카드처럼 실생활에서 쓸 의향이 있으십니까? (O, X)
7. 위와 같은 생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8. 가상자산과 주식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O, X)
9. 가상자산과 주식이 동일하게 과세된다면 이것에 찬성하십니까? (O, X)
10. 가상자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11. 코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O, X)
12. 코인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O, X)
13. 코인 거래소를 이요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있습니까?
14. 코인을 하면서 수익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O, X)
15. 주식을 한 적이 있습니까? (O, X)
16. 주식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O, X)
17. 주식 계좌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있습니까? (O, X)
18.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O, X)
19. 세무처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습니까? (O, X)
20. 세무처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O, X)
21. 세무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밭대학교 회계학과 융합캡스톤디자인 설문조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기능 범위"

1. 본인의 직업
2. 본인의 나이
3.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O, X) O
4.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O, X) X
5. 위와 같은 생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6.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상용화 된다면 현금이나 카드처럼 실생활에서 쓸 의향이 있으십니까? (O, X) X
7. 위와 같은 생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8. 가상자산과 주식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O, X) X
9. 가상자산과 주식이 동일하게 과세된다면 이것에 찬성하십니까? (O, X) O
10. 가상자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본인지식이 부족
11. 코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O, X) X
12. 코인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O, X) X
13. 코인 거래소를 이요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있습니까?
14. 코인을 하면서 수익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O, X) X
15. 주식을 한 적이 있습니까? (O, X) O
16. 주식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O, X)
17. 주식 계좌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있습니까? (O, X) X
18.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O, X) O
19. 세무처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습니까? (O, X) O
20. 세무처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O, X) X
21. 세무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세무사에게 전달

한밭대학교 회계학과 융합캡스톤디자인 설문조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기능 범위"

1. 본인의 직업 자영업
2. 본인의 나이 35
3.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O, X)
4.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O, X)
5. 위와 같은 생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6.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상용화 된다면 현금이나 카드처럼 실생활에서 쓸 의향이 있으십니까? (O, X)
7. 위와 같은 생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편해서
8. 가상자산과 주식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O, X)
9. 가상자산과 주식이 동일하게 과세된다면 이것에 찬성하십니까? (O, X)
10. 가상자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아직 신뢰가 안간다
11. 코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O, X)
12. 코인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O, X)
13. 코인 거래소를 이요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있습니까?
14. 코인을 하면서 수익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O, X)
15. 주식을 한 적이 있습니까? (O, X)
16. 주식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O, X)
17. 주식 계좌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있습니까? (O, X)
18.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O, X)
19. 세무처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습니까? (O, X)
20. 세무처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O, X)
21. 세무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사